

#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 10. 22)

## 1. 심사 경과

- 가. 2004. 10. 4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0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38호)
- 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(회계과장 장석기)

### 가. 변경 이유

- 2004년도에 취득·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취득·처분코자 함

### 나. 주요 내용

- 취득·처분 계상 재산 (단위:m<sup>2</sup>, 천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 액	담당부서	비 고
취득	국유재산	토지	1	412	418,180	도 시 건축과	도시계획도로 편입
처분	시유재산	토지	4	701	316,690		용현·북부 파출소 부지

### 다. 관계 법령

-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

### 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변경 계획안은 우리시의 소유인 용현면 송지리 229-1번지의 3필지의 대지 701㎡위에 경찰청소유인 용현파출소와 북부파출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찰청소유인 사천읍 평화리 51-1번지 대지 412㎡는 우리시가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무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것임.
- 교환이 가능한 재산은
  -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하고
  -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산의 상호 교환이 가능함.
- 따라서 우리시가 교환받을 재산은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재산이고 교환대상재산의 가격이 상호 4분3이상(76%)으로서 본 공유재산의 교환은 관련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관리변경계획은 승인 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원안 가결 의견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